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구미시장

2. 제안이유

- 공무원아파트 취득방법을 신축에서 분양매입으로 변경하여
신축시 예상되는 소규모 단지로 인한 품질확보 문제, 공사비 증가,
완공 후 사후관리 문제 등에 대처하고자 하며,
- 한국수자원공사 요청에 따른 4공단 조성 후 잔여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향후 행정수요에 대비하는 한편, 불용시 매각처분으로 시 수입
증대에 기할 수 있도록 하고,
- 전기버스 무선충전 급전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쾌적한 녹색환경 도시인 구미시에 걸맞는 친환경 첨단 전기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취득재산]

☐ 공무원아파트 (취득방법 변경)

<당 초 : 신축 >

- 비둘기아파트 신축부지 매입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10. 4. 6.)
 - 토 지 : 9,855m²
 - 기준가격 : 3,260,000천원 (분양가 기준)
 - 위 치 :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28B-2L

<변 경 : 매입 >

- 규 모 : 아파트 100세대 (전용면적 85m²이하)
- 기준가격 : 20,076,615천원 (분양가 기준, 585만원/평)
- 위 치 :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1B-1L

□ 4공단 조성 후 잔여부지 (기부채납)

○ 토 지

- 규 모 : 2,299m² (구미시 구포동 14 외 12필지)
- 기준가격 : 79,590천원 (대장가 기준)
- 기 부 자 : 한국수자원공사

□ 전기버스 무선충전 급전시설 (기부채납)

○ 구 축 물

- 규 모 : 전기버스 무선충전 급전시설 1식 (인버터·급전선로 포함)
- 기준가격 : 2,244,754천원 (사업비 기준)
- 위 치 : 구미시 선기동 747-33 외 4개소
- 기 부 자 : (주)올레브

4.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4항
- 「구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5. 검토의견

○ 본 계획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에

의거 공무원아파트를 분양매입하고, 4공단 조성 후 잔여부지 및 전기버스 무선충전 급전시설을 기부채납으로 취득 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공무원아파트 취득방법을 신축에서 분양매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축시 예상되는 소규모 단지로 인한 품질확보 문제, 공사비 증가, 완공 후 사후관리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함은 인정되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며

그리고, 4공단 조성 후 잔여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행정수요에 대비하는 한편, 불용시 매각처분으로 시 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끝으로, 전기버스 무선충전 급전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쾌적한 녹색환경 도시인 구미시에 걸맞는 친환경 첨단 전기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은 인정되나, 최첨단 시설인 만큼 향후 시설의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